

[별표 5]

## 자체측정 승인 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효율관리기자재	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				
전체 (어댑터·충전기, 텔레비전수상기, 셋톱박스, 모니터, 컴퓨터, 복합기, 프린터 제외)	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함.				
어댑터·충전기, 텔레비전수상기, 셋톱박스, 모니터, 컴퓨터, 복합기, 프린터	1. 시험설비				
	장 비 명	최대 측정범위	허용 오차	분해능력	보유 대수
	스톱워치 또는 타이머	-	±1%	-	1대 이상
	실내온도 측정기	50℃	±2%	-	1대 이상
	실내습도측정기	95%RH	±6%RH	-	1대 이상
	전력량계 또는 전력 자동 측정기록계	1W 이하 1W ~ 2000W	±20mW ±3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0.01W 이하</li> <li>- 10W 초과 100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0.1W 이하</li> <li>- 100W 초과 1.5kW 이하의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1W 이하</li> <li>- 1.5kW 초과 소비전력 측정값에 대하여 10W 이하</li> </ul>	1대 이상
	전압자동 측정기록계	600V	±1.5%	-	1대 이상
	주파수 측정계	3kHz	±0.2%	-	1대 이상
	입력 전압 안정화기기	-	±1.5%	-	1대 이상
	휘도계	350cd/m <sup>2</sup> 이상 (텔레비전수상기) 200cd/m <sup>2</sup> 이상 (모니터)	±2% ±2digit	-	1대 이상
	조도계	300lux 이상	±2% ±2digit	-	1대 이상
주) 1. 보유기자재의 최대측정범위값이 규정에서 정한 최대측정범위를 초과해도 조정후의 측정범위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만족할 경우는 기자재로 인정한다.					

효율관리기자재	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		
	2. 휘도계는 텔레비전수상기 및 모니터에 적용한다. 3. 조도계는 모니터에 적용한다. 4. 실내습도측정기는 복합기, 프린터에 적용한다.		
	2. 전문인력 :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소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기전자시험요원 1명 이상일 것		
	분야	고등학교 졸업	대학(4년미만) 졸업
	전기전자시험	3년	2년
			대학(4년이상) 졸업
			1년

(비고)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대로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해외 공장과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해외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외 공장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.